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36
----------	-----

2025. 1. 24.(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재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1월 21일

-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재주 의원)

가. 제안사유

○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이에, 국가유산 체제에 발맞춰 관련 조례인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에 따른 제명 변경

-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

- “문화재교육” → “국가유산교육”(안 제1조~제5조,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춰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교육 진흥”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교육의”를 “국가유산교육의”로, “문화재교육 진흥계획”을 “국가유산교육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국가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세우고”를 “수립하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국가유산교육”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을 “(협력체계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교육”으로, “마련”을 “구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문화재교육</u> <u>진흥에 관한 조례</u>	<u>충청북도 국가유산교육</u> <u>진흥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문화재교육</u> 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u>문화재</u> 에 관한 이해증진과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국가유산교육</u> <u>진흥</u> ----- <u>문화유산에</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u>국가유산교육</u> ”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문화재교육</u>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u>국가유산교육</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u>문화재교육</u> 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u>문화재교육 진흥계획</u> 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 <u>국가유산교육</u> 의 ----- ----- - <u>국가유산교육 진흥계획</u> ----- -----.
1. <u>문화재교육</u>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1. <u>국가유산교육</u> ----- -----
2. <u>문화재교육</u> 활성화를 위한	2. <u>국가유산교육</u> -----

기반구축

3.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
육 콘텐츠 개발·보급

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
원조달 방안

6.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
의 지원

7. 그 밖에 문화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재교
육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
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문화재
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재교육 현장의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교
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3. 국가유산교육 -----

4. 국가유산교육 -----

5. 국가유산교육 -----

6. -----

국가유산교육 -----

7. --- 국가유산교육 -----

② ----- 국가유산교육 -

----- 수립하고

-----.

제5조(실태조사) ----- 국가유산

교육 -----

-----.

1. ----- 국가유산교육 ---

2. 국가유산교육 -----

3. 국가유산교육 -----

4. ----- 국가유산교육 ---

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u>협력체계 구축</u>) 도지사는 <u>문화재교육</u>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u>마련</u> 할 수 있다.	제7조(<u>협력체계구축</u>) ----- <u>국</u> <u>가유산교육</u> ----- ----- - <u>구축</u>-----.
--	--